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(예비 입주자) 자격 확인 서류 안내 (1/2) 의왕역 SK VIEW

## ■ 자격 확인 서류 안내

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<br>서류  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<br>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감증명서 또는<br>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발급 구분 : 본인발급 / 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/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<br>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<br>[발급용도 : 기타선택 → "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" / 제출처 : "의왕역 SK VIEW"로 설정하여 발급]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배우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출입국에관한<br>사실증명(상세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건강보험<br>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  | 본인 및<br>만 19세<br>이상<br>세대원 | 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<br>[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/ Fax·신문서 제출가능]<br>※ 가입자 전체(직장+지역),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,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입증서류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<br>※ 소득입증 서류 참조<br>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가<br>서류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분리세대)<br>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국내거소신고증 또는<br>외국인등록증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<br>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<br>·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·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존속                | ·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비속                | ·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<br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임신진단서 또는<br>출생증명서          | 본인 또는<br>배우자               | ·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<br>·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/ 임신확인서 불가<br>※ 담당 의사명, 출산예정일,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<br>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<br>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포함하여 "전부" 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소유현황 /<br>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| 본인 및<br>세대원                | 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<br>·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<br>· "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"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(전국/건축물·토지·주택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<br>※ 자산입증 서류 참조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자산가액 입증서류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"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"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<br>※ 자산입증 서류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적격<br>의심 세대        | 주택 및 분양권 등<br>소유여부 증명서류    | 본인 또는<br>세대원               | 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군복무기간 명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축물확인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), 공동주택가격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"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"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해외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<br>· 해외 단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신청 시<br>추가서류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)<br>·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<br>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견본주택 비치 서식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/ 서약서(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포함) /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/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/ 비사업자 확인각서 / 부동산소유확인서 /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10.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  
※ 부적격 의심 세대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  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■ 소득 입증 서류

| 해당자격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 입증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         | 일반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<br>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<br>*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<br>*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br>*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<br>*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(직인날인) | ① 해당직장<br>② 해당직장, 세무서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금년도 신규취업자<br>금년도 전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재직증명서<br>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<br>*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(근로계약서(직인날인))<br>*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년도 전직자<br>(연말정산 이후인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재직증명서     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<br>*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<br>*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<br>발급되지 않는자<br>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 | ① 소득금액증명      ② 재직증명서<br>*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<br>*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,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위촉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영업자         |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<br>면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<br>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 세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<br>제출할 수 없는 자                  |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<br>* 국민연금 미가입자 :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<br>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<br>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국민연금공단<br>② 세무서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법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    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<br>*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<br>③ 사업자등록증명     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     ⑤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, ③<br>해당직장<br>③ 세무서<br>④ 등기소 |
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자급명세서<br>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, ②<br>해당직장, 세무서                 |
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br>*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주민센터,<br>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|
| 일용직 근로자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해당직장,<br>세무서                    |
| 무직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)<br>② 사실증명서 (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)<br>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견본주택 비치<br>② 세무서                |

\*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\*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 
\*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자산 입증 서류

| 해당자격                    | 자산 입증 제출서류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부동산<br>소유현황'이<br>있는 경우 | 필수<br>(소유증빙)    | ① 부동산 소유현황 (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<br>② 건물(토지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<br>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단위,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<br>(www.iros.go.kr)<br>② 위택스<br>(www.wetax.go.kr)<br>③ 행정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<br>(자산가액 증빙) | ① 공동(개별) 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<br>②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)<br>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건축물인 경우)<br>- 서울시 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의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<br>- 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<br>* 이택스,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"재산세 과세내역"을 발급받아 건물시가 확인가능 | ①, ②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<br>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<br>일사편리(kras.go.kr)<br>③ 서울시이택스<br>(etax.seoul.go.kr),<br>위택스(www.wetax.go.kr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자             | ·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<br>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: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<br>② 축산업 허가증,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: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<br>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<br>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br>- 중중소유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<br>② 지자체 축산과<br>③ 토지이음<br>(www.eum.go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부동산<br>소유현황'이<br>없는 경우 | 필수              |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<br>* 발급방법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<br>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<br>* 발급방법 : 위택스 > 발급 >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> 미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<br>(www.iros.go.kr)<br>② 위택스<br>(www.wetax.go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(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)의 자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\*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\* 자산가액(부동산가액)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,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특례 (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)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.